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8487

제안연월일: 2025. 2.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다음 2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.

건 명	의안번호	발의자 (제출자)	발의일	전체회의 상정일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	5503	서명옥의원 등 12인	'24.11.12.	'25.1.14.
	6164	한지아의원 등 10인	'24.12.3.	'25.1.14.

- 나.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(2025. 1. 22.)에서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.
- 다. 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(2025. 1. 23.)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- ※ 제421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(2025. 1. 23.)비용추계 생략의결

#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음주운전,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특히,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 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.

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,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.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, 이 중 5만 5,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.

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, 음주폐해예방에 대한 조사·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,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, 음주폐해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,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,161명, 부상자수는 122,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.

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, 세계보건기구(WHO)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 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
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"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

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"을 추가하고, 표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에 음주폐해로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,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제4항).
-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, 관련 조사·연구 등을 촉진하도록 함(안 제8조의3제1항).
- 다.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, 음주폐해 예방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25조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"내용"을 "내용,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"으로, "경고문구를"을 "경고문구 또는 그림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경고문구"를 "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"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중 "경고문구를"을 "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"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"경고문구가"를 "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"로, "경고문구를"을 "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"로 한다.

제8조의3의 제목 "(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·의존 관리)"를 "(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·의존 관리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조성"을 "조성, 음주폐해 예방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제1호 중 "지원"을 "지원, 절주교육 및 광고, 음주폐해 예방"으로 한다.

제31조의2제2호 중 "경고문구를"을 각각 "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"로 한다.

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3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주류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등) ① ~	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	4
률」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	
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	
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	
렁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	
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	
롭다는 <u>내용</u> 과 임신 중 음주는	<u>내용,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</u>
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	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
내용의 <u>경고문구를</u> 표기하여야	<u>수 있다는 내용</u>
한다.	
	경고문구 또는 그림을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4항에 따른 <u>경고문구</u> 의	⑥ <u>경</u> 고문구 또
표시내용, 방법 등에 관하여 필	<u>는 경고그림</u>
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	
정한다.	
제8조의2(주류광고의 제한·금지	제8조의2(주류광고의 제한·금지
특례) ① (생 략)	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	②
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	
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	

- 1. ~ 3. (생략)
- 4. 제8조제4항에 따른 <u>경고문구</u> 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 기하여 광고할 것. 다만, <u>경고</u>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자 할 때에는 <u>경고문구를</u> 주 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 하여야 한다.
- 5. 6. (생략)
- ③ (생략)
- 제8조의3(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 올 남용・의존 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・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하며, 이를 위한 조사・연 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다.
  - ② · ③ (생 략)
- 제25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기금 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 다.
  - 1. 금연교육 및 광고,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<u>지원</u> 등 국민건강관리사업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 <u>경고</u>
문구 또는 경고그림을
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
<u></u> 경고문구
<u> 또는 경고그림을</u>
5. • 6. (생 략)
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3(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
을 남용·의존 관리 등 <u>)</u> ①
<u>음주폐해 예방</u>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기금의 사용 등) ①
_
1
<u>지원,</u>
절주교육 및 광고, 음주폐해

- 2. ~ 12. (생략)
- ② · ③ (생 략)
- 제31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(생략)
  - 2.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<u>경고</u> 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<u>경고문구를</u> 표기한 자
  - 3. ~ 6. (생 략)

예방
2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31조의2(벌칙)
1. (현행과 같음)
2 <u>경고문구 또</u>
는 경고그림을
경고문구 또는 경
고그림을
3. ~ 6. (현행과 같음)